



경기도일자리재단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2026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」 기업 홍보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「4.5일제 시범사업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 이에 많은 기업이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관리 기업 대상으로 홍보를 요청드립니다.

가. 사업명 : 2026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

나. 모집기간 : 2026. 2. 25.(수) 09:00 ~ 3. 27.(금) 18:00

다. 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)

라. 지원내용

① 장려금 지급 :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7만원 임금보전 지원 단축시간별 차등 지급('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)

②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: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컨설팅, 근태관리시스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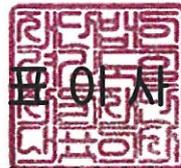
마. 신청방법 : 잡아바어플라이에서 '시범사업' 검색 후 온라인 신청(apply.jobaba.net)

바. 협조사항 : 기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청사 내 게시판 홍보물 부착 협조

사. 문의사항 :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(☎031-270-9839, work45@gjf.or.kr)

붙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 모집 공고문, 홍보 포스터 및 배너. 끝.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

수신자

경기성유산업연합회, 경기대진테크노파크, 사단법인
 경기도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,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, 경기도과학진흥원, 경
 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, 사단법인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, 고양시
 기업경제인연합회, 경기도과학진흥원

02/24

대리 안성진 북부광역사업팀 이정훈
장

협조자

시행 북부광역사업팀-683 (2026.02.24.) 접수

우 14576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43

전화 031-270-9847 /전송

/ candoit@gjf.or.kr

/ 공개

청령의 무게는 양심의 무게와 같습니다.

『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』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는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「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」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2월 25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모집 개요

- 신청 기간: 2026. 2. 25.(수) 09:00 ~ 3. 27.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PC 및 모바일) ※ 방문 접수 및 우편·이메일 접수 불가
 - 신청 페이지: 잡야바 어플라이(<https://apply.jobabana.net>)
- 신청 자격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(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)
- 사업내용: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 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
- ▶ (노동시간 단축 실시) 3개 유형 중 노사 합의로 택일

구분	유형1	유형2	유형3
명칭	주 4.5일제	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	격주 4일제
설명	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, 주1일(특정요일)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	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,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	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 (요일은 기업 자율선택)
1월 근로시간	1월 8시간 근무 x 4일 + 1월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	5월 7시간 근무 또는 3일 8시간 + 2일 6시간 근무 등	1주차 주 5일(1일 8시간) 근무 2주차 주 4일(1일 8시간) 근무
단축시간	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	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	2주 8시간
주간 총 근로시간	35시간 또는 36시간	35시간 또는 36시간	2주 평균 36시간

▶ (효과성 분석) 참여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, 정책 성과 분석

○ 지원내용: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·신규채용 장려금, 컨설팅 등 지원

- ① 장려금 지급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 지원(5시간 단축 시,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)
- ② 신규 인력 채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신규 채용 장려금 월 80만원 지원
- ③ 컨설팅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: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, 공정개선 컨설팅,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(기업당 15백만 원 한도,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)

2 신청 자격

(아래 ① ~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
- ①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¹⁾
 -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 불문)
 - ② 사업 도입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소정근로시간을 최종 주 35시간 또는 주 36시간 이하로 단축 예정인 기업(기 단축업체 참여 불가)
 - ③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
 -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제출 필수
 - ④ 지원인식, 휴대용 앱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
 -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
- ※ 최근 3개월의 전처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

<p>□ 지원 제외 사업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일 현재 국제 및 지방세 체납 기업 ·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· 민원 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· 도박, 유공 등 시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·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
<p>□ 지원 제외 근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주(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·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·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· 단시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· 정부 지원 사업 중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근로자(고용노동부 워라밸장려금,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등)
<p>□ 전직원 참여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습직원, 시급제 근로자, 시용 근로자도 단축 근로 대상이며, 근태 확인이 어렵거나 단축 근로 적용이 어려운 재택 근무자, 파견 근로자, 실습생, 사회복지요원 등은 제외 대상임 · 예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, 도급·용역계약서 등으로 단축 제외 사유 증명 필수 · 예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시 사업 참여 불가

1) 중소기업기본법 제33조에 의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의한 중견기업

5 심사 방법

○ 서류 검증 절차



○ 선정방법: 정량평가(서류심사) 및 정성평가(심의위원회 심의)

○ 심사 및 평가

- 심사방법: 서류심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

- 평가 및 배점: 총점 100점 (정량평가 20점, 정성평가 80점) ※총점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

○ 선정 및 결과 통보

- 정량 · 정성평가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으로 선정, 결과는 개별 통지

- 미선정된 기업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대조군 및 처년도 사업대상 후보로 별도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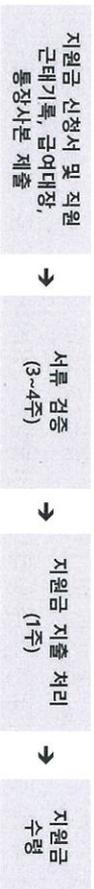
- 선정 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

6 장려금 지급

① 근로시간 단축장려금

- 지급 시기: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(2개월 단위로 지급)

※ '26년 5~6월 단축분 지원금은 '26년 7월 신청·8월 지급



- 지급 방법: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

- 지급 금액: 월 최대 27만원, 단축시간별 차등 지급('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)

연번	구분	금액	비고
1	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	인당 270,000원	
2	주당 소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	인당 220,000원	

② 신규채용 장려금(신규)

- 지급 대상: '25년 및 '26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중, 신규채용 사업 직전 3개월 평균 상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기업

※ 신규채용 근로자 요건: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·6개월 이상 재직 시, 타 정부사업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

- 지급 시기: 신규 직원 입사 후 3개월 이후 1차 지급, 6개월 이후 2차 지급

- 신청 방법



- 지급 방법: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

- 지급 금액: 근로자 1인당 80만원(최대 6개월)

7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제한

○ 참여기업이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, 또는 근태자료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「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액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근거법령)

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2.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-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.